

제20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

1. 일 자 : 2020.6.18.

2. 심의안건

- 수산부류 중도매인 5명이 신청한 2020년도 하반기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 품목 거래허가 적격 여부 심사

3. 의결사항

- 허가 적격 여부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한 결과, 허가 요건에 부합하므로 서울시에 허가 요청하기로 의결함

<중도매인심사위원회 위원 의결>

구 분	직 위	성 명	찬반여부		서 명
			찬 성	반 대	
위원장	유통본부장	김원필	○		김원필
위 원	기획홍보팀장	신장식	○		신장식
위 원	유통총괄팀장	이니세	○		이니세
위 원	물류개선팀장	박경선	○		박경선
위 원	농산팀장	서경남	○		서경남
위 원	수산팀장	손봉희	○		손봉희
위 원	가락물운영팀장	김대영	○		김대영

붙임 2020년도 제20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1부. 끝.

[붙임]

2020년도 제20차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심사 자료

1. 건명 : 2020년 하반기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품목 거래허가 신청 수산부류 중도매(법인) 적격 여부 심의

2. 근거사항

- 수산팀-1301(2020.6.1.)호, 「2020년 하반기 수산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신청 접수 안내」

3. 신청자

-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품목 거래허가 신청자 : 5명

4.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
- 신청자격
 - 공고일 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
 -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, 다음의 거래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자

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	보증금
20백만원 이상	60백만원 이상
15백만원 ~ 20백만원	45백만원 이상
10백만원 ~ 15백만원	30백만원 이상
5백만원 ~ 10백만원	20백만원 이상
5백만원 미만	10백만원 이상

※ 거래한도는 정산회사와 체결된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- 가락시장 정산(주) 참여자로 정산회사의 이용거래 계약(약관 포함)을 체결한자
- 반입물량 신고 철저 및 장외거래 금지 등을 위한 중도매인 서약서를 제출한자
- 허가기간 중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(경고와 업무정지 처분 실적이 모두 있을 경우 업무정지 1회는 경고 2회로 간주하여 적용)
- 허가기간 중 ‘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품목 연간 평균 거래금액’이 ‘부류별

연간 거래금액 기준'(선패류 1,500만원, 젓갈류 및 건어류 2,600만원) 이상인 자
(단, 법인전환 등으로 허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 허가 신청의 경우는
거래금액 기준 적용 제외)

- 허가신청 시 공사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한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 관련
채권압류 금액이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품목 거래보증금과 공사 시설
사용보증금의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
- 허가신청 시 법정수수료를 3개월 초과 체납하지 아니한 자
- 기존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 허가자 중 허가신청 이전 정산시스템
(UNIS2)의 정산 지불처리를 완료한 자

○ 구비서류

-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1부
- 은행잔액증명서 등 운전자금 확보 입증 서류 1부
- 정산회사 이용관련 서류(정산회사에서 수령·제출)
 -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(보증금 납입영수증 등 포함) 1부
-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
- 대금정산 내역 열람(확인) 동의서 1부
- UNIS 미지불리스트 지불처리 소명양식 : 중도매인 확인용 각서, 출하자 지불처리 확인서
※ 기존 직접거래자 중 해당자에 한하며 대상기간은 중도매인별 미지불 내역 전체

5. 심의 안건

- 수산부류 중도매인 5명이 신청한 2020년 하반기 중도매인 직접거래(상장예외)
품목 거래허가 적격 여부

6. 검토 의견

- 허가 요건에 부합하고 구비서류를 완비한 신청자 5명에 대하여 서울시에 추천

붙임 2020년 하반기 수산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추천명단 1부. 끝.